

미래융합교육원 운영세칙

- 제정 : 1993.03.01.
- 개정 : 1994.12.12.
- 개정 : 1996.03.06.
- 개정 : 1998.05.21
- 개정 : 1999.09.01.
- 개정 : 2000.10.01.
- 개정 : 2002.11.01.
- 개정 : 2014.11.01.
- 개정 : 2015.09.28.
- 개정 : 2016.01.01.
- 개정 : 2017.05.01.
- 개정 : 2018.10.05.
- 개정 : 2024.03.0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수원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다만,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4.03.01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운영세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우선 적용된다.

제2장 세부과정과 학생정원

제3조(세부과정) 미래융합교육원 규정 제6조에 정한 각 과정의 세부과정은 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24.03.01.>

제4조(정원) 각 세부과정의 학생정원은 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

제5조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학기당 7주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(학기) 수업일수가 18주 이상인 과정은 연 2학기로 구분하며 학기는 다음과 같다.

1. 1학기 : 3월초부터 8월말까지
2. 2학기 : 9월초부터 익년 2월말까지. 다만, 2학기의 시작은 사정에 따라 2주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

제7조(정기휴업)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국정공휴일

제8조(임시휴업) 입학시험, 졸업식 기타 본교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
제9조(보충수업)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은 보강을 지시할 수 있다.

제4장 모집, 입학

제10조(모집방법) ① 학점인정제의 모집방법은 별도 규정한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따른다.

② 기타의 과정은 선착순,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를 병행 할 수 있다.

제11조(입학자격) ① 학점인정제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.

② 비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세부과정의 성격상 입학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지원절차) 각 과정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(소정 서식)
2. 사진(반명함) 3매
3. 졸업증명서
4. 학적부 사본

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중 일부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.

제5장 수업연한, 교과과정, 학점이수, 성적

제13조(등록) ① 학생은 매학기별로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② 등록절차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입함으로써 완료된다.

제14조(수업연한) ① 수업연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② 삭제

제15조(교과과정) 각 과정별 교과과정은 원장이 정한다.

제16조(학점이수) 각 과정별 이수학점은 원장이 정한다.

제17조(학업성적) ① 비학위과정의 학업성적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격(P), 불합격(F)으로만 구분한다.

② 학점인정제의 학업성적은 별도 규정한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따른다.

③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장 휴학, 제적

제18조(휴학) ① 삭제

② 삭제

③ 삭제

제19조(제적) 다음의 경우 제적할 수 있다.

1. 매학기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.
2.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.

3. 원장 및 교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.

제7장 주임교수, 지도교수 및 겸임교수

제20조(주임교수) 본 교육원의 원활한 교육 및 수강생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21조(주임교수의 임무) 주임교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수업에 관한 업무
2.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업무
3. 강좌의 개설에 관한 업무
4. 기타 원장이 요청하는 업무

제22조(지도교수) ① 본 교육원의 교육 및 학생지도를 분담하기 위하여 원장은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는 학생지도, 학업지도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겸임교수, 초빙교수) ① 산업체, 교육, 연구기관 또는 저명한 기관, 단체 등에서 본교 개설과정과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본 교육원의 전문적인 교과목 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좌별로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대우 및 급여는 총장이 정하는 지급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③ 삭제(2018.10.05.)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